

[] 해운중개업 [] 선박대여업
[] 해운대리점업 [] 선박관리업 등록(갱신)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---

신청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)	
	등록기준지(대표자)	

계약상대방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
국적선박현황	선명	선박번호
사업개시예정일		
등록갱신 기간		

「해운법」 제33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·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해운법」 제36조에서 준용하는 「해운법」 제8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. 해당 국가의 정부,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.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「재외공관공증법」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. 사업계획서 1부 3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4.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(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) 사본과 그 번역문(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각 1부.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 5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6.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(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,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7. 등록증 원본(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※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수수료 3천원 (갱신: 없음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선박국적증서(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